

쉽고도 간편한 해결방안

민사조정제도



김 상 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I. 그래도 소송은 힘들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법률관련 기초지식을 설 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만으로 법률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믿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을 도와주는 「농민법률구조사업」과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농과 생활속에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모두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먼저 우리 농업인이 평소에 소송이나 다툼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정서상의 문제가 있고, 또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더라도 다른 당사자끼리의 감정처리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람이 모두 냉철하게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생각하는, 즉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점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구와 어떤 문제로 대결하게 될 경우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다툼에서 이기려하고 또 이겨야만 한다는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동원되어 자세한 심리와 연구 끝에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더라도 폐소한 사람은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 항소하고 또 상고하여 이기고자 하며 법에 정한 모든 절차에서 사건의 흑백이 분명해지고 자신의 잘못이 밝혀져도 그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소송으로 확정된 결과를 두고 이긴 사람은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또다른 법적절차를 밟게되고 진사람은 재판부와 증인에게 원한을 갖게되고 소송상

대방에 대한 패배감은 대물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알기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도 소송을 주저하게 되고 적당한 화해방법이 있다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원만히 끝을 맺고 싶어한다.

그러한 원만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2. 명판결은 법조문 밖에서

한아이를 두고 두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솔로몬은 그 아이를 둘로 쪼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내려 친어머니를 찾아준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는 판례가 전해온다.

전라도 강진땅에 살던 한여인이 도암마을에 시집갔다가 아들 셋을 낳고 남편을 잃었는데 주변에서 강권하여 다시 칠량마을에 사는 홀아비와 재혼하여 다시 아들 셋을 낳았다고 한다.

그후 세월이 흘러 새남편도 죽고 여인이 늙어 외롭게 되자 도암의 자식들과 칠량의 자식들이 노모를 서로 봉양하겠다고 다투다가 결국은 강진현감께 소송을 냈다고 한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강진현감은 "살아서는 칠량에서 살고 죽어서 제사는 도암에서 지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도암은 물산이 없어 살림이 곤궁했고 칠량은 전답이 많고 생선 또한 넉넉해 노인을 봉양하기 쉬운 현실적인 기준과 함께 죽은 다음에는 큰자식이 제사를 모시게 함으로써 성이 다른 형제간에 두고두고 우애와 화목의 계기를 만들어 준 점에서 당대 제일의 명판결이라고 두고두고 칭송되고 있다.

이러한 명판결은 법조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에 여러가지 요소, 즉 자식들간의 살림살이 규모와 형편, 생전의 안락과 사후의 분쟁문제까지 모두 감안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법률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유능하고 원만한 성품을 가진 법관이나 중재자가 절실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농업인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었는데 몇년이나 계속된 기상재해와 불운으로 실농했을 경우 임차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축이 죽었을 때 수의사의 책임을 두고 끝없이 벌어지는 논쟁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다툼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다가 주장하는 근거가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법이 정한대로 판결할 경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농업인끼리라면 서로가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 수 있으므로 약간씩 물러서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도시인이나 상인과 문제 가 생기면 일의 진행이 각박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이란 개인간의 다툼을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 각자의 사정을 간단한 절차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하고 화해하게 하는 절차로서 법률로써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간단, 신속하게 해결방안이 결정될 뿐 아니라 조정이 대부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화해로 끝나므로 분쟁의 뒷마무리가 원만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다.

그리고 재판에서처럼 엄숙한 분위기와 절차가 아니라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할 말을 모두 할 수 있는 점도 좋은 일이다.

또 재판의 판결이 법조문을 벗어날 수 없는데 비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나 원로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조문에 얹매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해 주므로 재판보다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조정결과도 재판판결이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인데 반해 조정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 후유증을 없애 준다.

민사조정의 신청은 양측 당사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관이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

그리고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을 맡을 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법원에 찾아가서 담당직원에게 말로서 신청해도 된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내용이나 다툼의 내용과 전말, 자신의 형편과 의견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거짓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사건과 관련한 증거서류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신청자가 조정기일통지를 받으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꼭 참석해야 한다. 만약 두 번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신청한 조정사건에 두 번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의 요구대로 결정되는 수가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판사의 조정과 중재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조정이 성립한다.

또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식이나 도리에 어긋날 때에는 판사가 합의를 무시하고 내용을 바꾸어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선언,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조정결정은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손해 볼 일은 없다.

즉 조정신청시에 곧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만약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인지대는 소송 시 인지대에서 조정신청시의 인지대를 빼주므로 비용 면에서도 불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4. 농촌의 평화를 지키려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수단은 투쟁이라는 말이 있다.

즉 평화를 지키려면 반드시 투쟁을 할 각오가 있어

농업인끼리나 마을 이웃간에

생기는 분쟁은 굳이 민사조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분쟁 당사자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변호사님과

공익법무관에게 조정을 요청해도 된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즉석에서 조정의견을

내어줄 것이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농협 임직원이나 검찰청 인사들을

참여시킨 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결정을 내려준다.

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의 평화를 지키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투쟁의 목표는 곧 평화를 얻고 또 지키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므로 권리침해 당했을 때 그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내가 양보해야 할 때는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양보를 명분 있게 해주는 것이 곧 민사조정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농촌의 평화를 내손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농촌의 평화는 법만으로도, 투쟁만으로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농촌주민 각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평화에 대한 의지, 희생할 각오 아래서만 지켜지는 것이다.

농업인끼리나 마을 이웃간에 생기는 분쟁은 굳이 민사조정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분쟁 당사자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변호사님과 공익법무관에게 조정을 요청해도 된다.

단순한 사건이라면 즉석에서 조정의견을 내어줄 것이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는 농협 임직원이나 검찰청 인사들을 참여시킨 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결정을 내려준다.

또 이러한 약식조정의견은 모두 무료이다.